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1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 산하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차이에 따른 불균형과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사용료를 경감함으로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3조의2)
- 나.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함(안 별표2개정)
- 다. 시립도원수영장 이용사용료를 현실화함(안 별표3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체 육 시 설 전 용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시립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시립도원체육관	주간	70,000	110,000	240,000	36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105,000	165,000	360,000	54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그 밖의 심야 등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피겨스케이팅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주간	20,000 (면당)	25,000 (면당)	35,000 (면당)	45,000 (면당)	*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축구,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시립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경기장	30,000	50,000	100,000	15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I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ING야구장	야구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구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사이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면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별표3]

체 육 시 설 이 용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1인당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월 회 원	월 강 습	
시립도원수영장		1회		일반 3,0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일반 2,7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800	일반 46,000 군인· 청소년 40,000 어린이 25,000	일반 56,000 군인· 청소년 46,000 어린이 30,0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대여료는1,000원(동일 일기준)
시립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1,000	3,000 (면당)	30,000	60,000	
시립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일반 30,000 군인· 청소년 20,000 어린이 12,0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40,000 군인·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시립옥련 사격장	실 내	1회2시간		700	400			
시립수봉양궁장		1회2시간		2,100	1,400	20,000		
시립수봉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1회2시간		1,400	1,000	14,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1회 1일		학 생 5,000		경륜선수 300,000		
				일 반 7,000		일반선수 100,000		
시립다목적 운동장	정구코트	1 회	주간	1,000	3,000	30,000	60,000	
		1시간	야간	1,500	4,500	45,000	90,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1. ~ 3. (현행과 같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 상인 자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6조(사용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4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장수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체육시설의 이용사용료 인상에 따른 비용과 상위법에 따라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이용사용료 감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용 범 의원